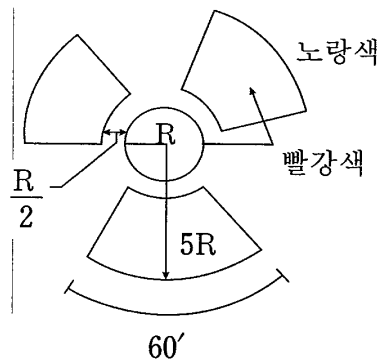


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[별표 5]

방사선구역표시(제9조제2항 관련)

방 사 선 구 역
(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실)



허가되지 아니한 출입은 금합니다.

R=2.5cm 이상